

스마트사이니지 포럼 운영 규정

제정 : 2015. 06. 11.

개정 : 2017. 05. 25.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명칭) 본 포럼은 스마트사이니지 포럼(이하 '포럼'이라 한다)이라 칭하고, 영문으로는 "Smart Signage Forum" 으로 표기한다.

제2조 (목적) 포럼은 스마트사이니지와 관련한 국내외 시장 환경조성 및 업체 간 유대강화 및 공동사업을 통한 산업 활성화 추진, 주요 쟁점사항 협의 및 조정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스마트사이니지 관련 공동 기반기술 개발 및 확보 방안 연구
2. 스마트사이니지 시험, 인증, 상호연동 방안 연구
3. 스마트사이니지 관련 포럼표준 제정 및 국내·외 표준화 추진 협력방안 연구
4. 스마트사이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 및 법 개정 연구
5. 스마트광고, 유무선 방송통신 융합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방안 연구
6. 스마트사이니지 산업체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상생모델 연구
7. 스마트사이니지 산업 실태조사 및 관련 시장동향 분석
8. 스마트사이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, 전시, 세미나, 학술행사 개최 및 참가
9. 기타 포럼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

제2장 회원

제4조 (회원의 구분 및 자격) ① 포럼의 회원은 (사)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(이하

'협회'라 한다) 회원 중 포럼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하며, 그 구분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.

② 협회 정회원 중 포럼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포럼 가입 절차를 거쳐 정회원이 된다.

③ 협회 특별회원 중 포럼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포럼 가입 절차를 거쳐 특별회원이 된다.

④ 2015년 한시적으로 준회원 제도를 도입한다.

제5조 (가입)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포럼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사무국(협회 사무국과 동일)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 (회원의 권리)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1. 포럼의 모든 활동에 참여 가능
2. 포럼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및 의결 참여
3. 스마트사이니지 관련 정보의 우선 수혜
4. 포럼이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워크샵, 무료 또는 할인 혜택
5. 6개월 이상 소정의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준회원으로 전환

②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1. 포럼의 활동에 참여 가능 (단, 총회 의결권은 없음)
2. 스마트사이니지 관련 정보의 수혜
3. 포럼이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워크샵, 무료 또는 할인 혜택

③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1. 배포자료 정보 공유
2. 포럼이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워크샵 참여 혜택

제7조 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.

1. 포럼 운영규정 준수 의무
2. 총회,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준수 의무
3. 협회비 납부의 의무

제8조 (탈퇴 및 제명) ① 회원 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국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자격이 상실된다.

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

처리할 수 있다.

1. 운영규정 또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
2. 포럼의 명예와 권익을 훼손하였을 경우
3. 포럼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
4.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명 처리가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

제 3 장 임 원

제9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포럼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의장 1인
2. 부의장 10인 이내
3. 운영위원장 1인
4. 운영위원 25인 이내
5. 분과위원장
6. 감사 1인

제10조(임원의 선임 및 임기) ① 의장과 부의장, 운영위원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.

② 포럼 회원 중 운영위원 및 분과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의사를 표하거나, 포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무국이 추천하여 의장의 결정으로 선임한다.

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④ 임원의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만료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.

⑤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기관에서 퇴임.전직.전보 등으로 인하여 그 지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전임 임원의 직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,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 (임원의 직무) ① 의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의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, 활동결과를 의장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포럼 운영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.

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분과 운영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.

⑥ 감사는 포럼 활동의 제반 사항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,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.

제 4 장 조직 구성

제12조 (조직) 포럼은 총회와 운영위원회,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둔다.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원회 등의 조직을 추가할 수 있다.

제13조 (총회) ① 총회는 포럼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포럼의 의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정기총회는 의장의 소집으로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, 년 1회 개최한다.

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.

1.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
2. 기관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3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14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운영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3. 의장과 부의장, 운영위원장,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
4. 포럼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
5.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5조 (총회의 의결방법)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② 총회의 의결사항 중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.

제16조 (운영위원회) ① 운영위원회는 포럼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총회의 위임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.

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.

③ 분과위원장은 운영위원에 포함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
제17조 (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) 운영위원회는 포럼 사업과 운영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
3.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포럼 표준(안) 의결
4.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사항
6. 회원 제명
7. 기타 포럼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8. 포럼 표준문서(안) 승인에 관한 사항

제18조 (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) ①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운영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
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운영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.

제19조 (분과위원회)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. 분과의 구성은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.

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분과위원회 사업 및 예산에 관한 사항
2.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의결사항과 운영위원회에서 부여한 사업의 수행내용 및 수행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분과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분과위원회에 복수 참여한 회원은 참여 수에 상관없이 회원별로 1개의 의결권만 가진다.

⑤ 분과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
⑥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분과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.

제20조 (사무국)

① 포럼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, 사무국은 (사)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 내에 설치한다.

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포럼의 사무 및 각종 회의의 운영지원
2. 포럼 가입 및 탈퇴와 관련한 사무
3. 포럼 예산 및 회계와 관련한 사무
4.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
5. 기타 포럼 운영에 필요한 부대 업무

③ 사무국은 포럼의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사항을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재원 및 회계 관리

제21조 (운영재원) 포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.

1. 포럼 회원이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

2. 회원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분담금
3. 포럼과 관련된 업체, 단체 및 기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
4. 포럼 자체 사업 또는 위.수탁 사업의 추진에 의한 수익금 등

제22조 (회계연도) 포럼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
제 6장 보 칙

제23조 (해산) ① 포럼은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.

- ② 해산 후 잔여재산의 처분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.

제24조 (운영세칙)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이 필요하거나 본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의 제 규정을 따른다.

제25조(포럼표준 제정 및 관리 규정) ① '스마트사이니지포럼 표준문서의 제정 및 관리 등에 대한 요령'의 별도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포럼표준을 제정하고 관리한다. (※별첨 : 스마트사이니지포럼 표준문서의 제정 및 관리 등에 대한 요령.)

- ② 포럼표준 제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③ 표준문서 및 기술보고서는 포럼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. (※별첨 : 표준문서 및 기술보고서 양식.)

부 칙

제1조 (규정의 효력) 본 규정은 포럼 창립총회에서 의결되는 날로부터 시행 한다.

제2조 (창립 조직 및 임원 선임) 포럼 창립 조직의 구성 및 임원 선출은 창립총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.

제3조 초대 운영위원장은 포럼 의장이 겸직하는 것으로 한다.